

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	2007 ~ 23
----------	-----------

제출연월일	2007. 7. 5.
제 출 자	거 창 군 수

1. 개정이유

행정자치부의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현실화 추진계획(2005.5.31.)에 따라 현재 5,000원인 주민세의 세율을 단계적, 연차적으로 10,000원으로 인상하여 자주재원 확보에 기여 하고자 함

2. 주요내용

- 가. 개인균등할 주민세 세율 5,000원을 10,000원으로 함(안 제21조)
- 나. 개인균등할주민세 세율 적용특례 : 제21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개정에 불구하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 세율을 8,000원으로 함(안 부칙 제2조)
- 다. 법제처의 “법령입안 심사기준” 개정에 따른 인용하고 있는 법령명에 낫표(「 」) 사용 및 목적조항의 특수문자 금지, 법률용어의 한글화(안 제1조, 안 제2조, 안 제5조, 안 제10조, 안 제17조, 안 제25조제2항, 안 제34조, 안 제62조제1항·제2항, 안 제94조제1항, 안 제100조제2항)

3. 참고사항

- 가. 관계법규 : 「지방세법」 제3조 및 제176조
- 나. 예산조치 : 해당 없음
- 다. 그 밖에
 - (1)신·구조문대비표 : 붙임
 - (2)입법예고(2007. 6 . 8. ~ 6 . 27.)결과 : 의견 없음

거창군조례 제 호

거창군세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거창군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조 중 “거창군세(이하 “군세”라 한다)”를 “거창군세”로 한다.

제2조 중 “군세”를 “거창군세(이하 “군세”라 한다)”로 한다.

제5조 중 “거창군세부과징수 규칙”을 “「거창군세 부과징수 규칙」”으로 한다.

제10조 중 “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”를 “「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」”로 한다.

제17조 중 “거창군이장정수조례 및 거창군반설치조례”를 “「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」 및 「거창군반설치조례」”로 한다.

제21조제1항제1호 가목 중 “5,000원”을 “10,000원”으로 한다.

제94조제1항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하고, “날로부터”를 “날부터”로 한다.

제25조제2항·제34조·제62조제1항 및 제2항·제100조제2항 중 “각호의 1”을 “각 호의 어느 하나”로 한다.

부 칙

①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②(개인균등할주민세 세율 적용특례) 제21조제1항제1호 가목의 개정에 불구하고 2007년부터 2008년까지의 세율을 8,000원으로 한다.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거창군세(이하 “군세”라 한다)</u>의 부과와 징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	<p>제1조(목적) -----<u>거창군세</u> ----- -----.</p>
<p>제2조(지방세 법령의 적용) <u>군세</u>의 세목, 과세객체, 과세표준, 세율 기타 부과·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지방세 법령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.</p>	<p>제2조(지방세 법령의 적용) <u>거창군세</u> (이하 “군세”라 한다)----- ----- -----.</p>
<p>제5조(조례시행에 관한 규칙)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<u>거창군세부과·징수규칙</u>(이하 “규칙”이라 한다)으로 정한다.</p>	<p>제5조(조례시행에 관한 규칙) ---- ----- -----「<u>거창군세 부과징수 규칙</u>」----- -----.</p>
<p>제10조(부과징수사무의 위임) <u>군수</u>는 군세의 부과, 징수에 관한 사무중 납세고지서, 독촉장, 최고장 등의 송달, 군세의 징수금의 징수, 기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무를 정하여 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할 수 있다. 이 경우 구체적인 사무의 위임은 <u>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</u>로 정한다.</p>	<p>제10조(부과징수사무의 위임) 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「<u>거창군사무의읍면위임조례</u>」----- -----.</p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7조(서류의 송달 방법) ①영 제 39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서류의 송달은 <u>거창군이장정수조례 및 거창군반설치조례</u>에 의하여 임명된 이장 또는 위촉된 반장을 통하여 교부할 수 있다.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17조(서류의 송달 방법) ①----- ----- --「<u>거창군 리명칭 및 구역확정에 관한 조례</u>」 및 「<u>거창군반설치조례</u>」 ----- -----.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1조(세율) ① (생략)</p> <p>1. (생략)</p> <p>가. 군의 관할구역안에 주소를 둔 개인의 세율 : <u>5,000원</u></p> <p>나. (생략)</p> <p>2. (생략)</p> <p>② (생략)</p>	<p>제21조(세율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1. (현행과 같음)</p> <p>가. ----- ----- : <u>10,000원</u></p> <p>나. (현행과 같음)</p> <p>2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25조(납세의무자) ① (생략)</p> <p>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하는 자는 재산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25조(납세의무자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--- -----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.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34조(토사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) 다음 <u>각호의 1</u>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가 건축년월일, 소재지, 지번, 구조, 용도, 층수, 면적과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	<p>제34조(토사건축물 및 주택에 대한 신고의무) -----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

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62조(가산세)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신고불성실가산세를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.</p> <p>1. ~ 5. (생략)</p> <p>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 100분의 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.</p> <p>1. ~ 4. (생략)</p> <p>③ (생략)</p>	<p>제62조(가산세) ①--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5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4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③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94조(신고의무)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건축물 및 주택의 건축년월일, 소재지, 지번, 구조, 용도, 층수, 면적과 그 사유를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<u>날로부터</u>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6. (생략)</p> <p>② ~ ④ (생략)</p>	<p>제94조(신고의무) ①- 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 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u>날부터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6.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~ ④ (현행과 같음)</p>
<p>제100조(신고의무) ① (생략)</p> <p>②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실이 발행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.</p> <p>1. ~ 7. (생략)</p>	<p>제100조(신고의무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--<u>각 호의 어느 하나</u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-----</p> <p>1. ~ 7. (현행과 같음)</p>